1.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도시가스요금 경감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거주지에서도 요금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도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도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의 적용기간을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산업통상부고시 제 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스도매사업자가 제3호에 따른 대신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별표9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거주지 중 경감신청 대상 주소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실거주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아 해당 주소지에 대하여 요금경감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신설규정은 202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감신청) 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감신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경감신청)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스도매사업자가 제3호에 따른 대신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별표9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거주지 중 경감신청 대상 주소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실거주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아 해당 주소지에 대하여 요금경감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4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4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부칙 제1조(시행일) ----------. ----------. ---------- 2027년 11월 30일----------.